

# 평생교육원 운영 규정

제 정 : 2012. 9. 1.  
개 정 : 2020. 10. 20.  
개 정 : 2021. 12. 17.  
개 정 : 2025. 8. 1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본 교육원은 금강대학교 평생교육원(이하 “본원”)이라 칭한다.

**제2조(설립목적)** 본원은 금강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) 건학이념 및 교육목적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사업)** 본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신설 2020. 10. 20.>

1.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
2. 평생교육 관련 콘텐츠 기획, 개발 및 운영
3. 평생교육 관련 국책사업, 정부 및 민간 위탁교육, 학회자격교육, 민간자격교육, 지역사회 교육 운영
4. 그밖에 교육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**제4조(위치)** 본원은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522 금강대학교 내에 둔다.

## 제2장 조 직

**제5조(원장)** ① 본원은 평생교육원장(이하 “원장”)을 두며, 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필요시 전임교원 또는 내·외부 전문가 중에서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0. 20., 2021. 12. 17.>

-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20. 10. 20.>
- ③ 본원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본원 업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20. 10. 20.>

## 제3장 운영위원회

**제6조(구성)**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겸한다. <개정 2020. 10. 20., 2021. 12. 17.>
- ③ 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.

**제7조(임기)**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0. 20.>

**제8조(기능)**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<개정 2020. 10. 20.>
4.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
5.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**제9조(의결)**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 제4장 교육과정

**제10조(학습기간)** 본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. <개정 2020. 10. 20.>

**제11조(학습일수)** 본원의 학습일수는 각 과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20. 10. 20.>

**제12조(지원 자격)**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각 과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0. 20.>

**제13조(선발방법)** ①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지원 절차에 따라 접수하여야 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20. 10. 20.>  
②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육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20. 10. 20.>

**제14조(교육과정 등)** ① 본원에는 정부 및 민간위탁교육과정, 학회자격교육과정, 민간자격교육과정, 지역사회교육과정 등을 두며, 세부교육과정은 각 과정별로 별도로 정한다. <신설 2020. 10. 20.>  
② 본원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및 학습인원, 학습비 등은 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20. 10. 20.>  
③ 제2항의 교육과정과 학습인원 및 제15조의 학습비 등에 신설·변경이 있을 시 그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0. 20.>

**제15조(학습비)** ①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학습비용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0. 20.>

**제16조(이수 및 이수증 교부)** ① 본원의 이수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출석일수 2/3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. <개정 2020. 10. 20.>  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자에게는 이수증<서식 1>을 교부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0. 20.>

**제17조(교수 및 강사)** ① 본원의 교수는 교육과정별로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로서, 본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위촉한다. <신설 2020. 10. 20.>

② 교수(강사)는 본원에서 개설하는 강좌의 강의를 담당하며, 보수는 본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. 단, 전문학술단체와 연계사업으로 운영하는 강좌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. <신설 2020. 10. 20.>

## 제5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

**제18조(자치회)**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.

**제19조(학습자 활동의 금지)** 학습자는 본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, 집단행동·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.

**제20조(포상 및 징계)**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, 수강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0. 20.>

## 제6장 부속기관 및 기타사업

**제21조 (부속기관 및 기타사업)** ① 필요한 경우 분원 및 위탁교육기관을 둘 수 있으며, 분원 및 위탁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0. 20.>

② 본원은 산·학·연 관련사업 및 기타 사회기여활동을 할 수 있으며,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본원은 정부 등 공공기관과 연계사업을 할 수 있으며,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협약내용에 따른다. <신설 2020. 10. 20.>

④ 본원은 학회자격교육과정 및 민간자격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전문학술단체와 연계사업을 할 수 있으며,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상호발전협약내용에 따른다. <신설 2020. 10. 20.>

⑤ 제4항에 규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이수증<서식 2>을 교부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10. 20.>

## 제7장 재 정

**제22조(재정)** 본원의 재정은 학습비, 보조금,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**제23조(예산편성)** 본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. 단, 학회자격교육과정 및 민간자격교육과정을 위한 학술단체 연계사업에 따른 수입은 제외한다. <개정 2020. 10. 20.>

**제24조(회계년도)** 본원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.

**제25조(예산 및 결산)** 본원의 회계업무는 본 대학교 재무회계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25. 8. 1.>

**제26조(준용)**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에 준하며 기타 본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나 총장의 승인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0. 10. 20.>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서식 1> <개정 2020.10.20>

제 호

이 수 증

성 명 :

생년월일 :

위 사람은 금강대학교 평생교육원  
○○○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

년 월 일

금강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 ○○○ (인)

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

금강대학교 총장 ○○○ (인)

<서식 2> <신설 2020.10.20>

제 호

# 이 수 증

성 명 : ○○○

생년월일 : ○○○

위 사람은 금강대학교 평생교육원과  
○○○학술단체가 연계한 ○○○자격과정을  
이수하였음을 증명함

년 월 일

금강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 ○○○ (인)

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

○○○ 학술단체 대표 ○○○ (인)